

고성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55호)

심사 보고서

1997. 12. 23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12. 13
나. 회부일자 : 1997. 12. 16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7. 12. 23

고성군수

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사유

○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고성군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(1가구 1차량의 범위) 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 삽입 (안 제2조②항)
-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(1가구 1차량의 범위)규정과 동일한 감면조항 삽입 (안 제4②항조)
- 학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 (현행 제10조)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증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확대 감면함. (안 제12조)
- 농외소득 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전면수정함.(안 제13조)
-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.(현행 제17조)
-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1조)
-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2조)
-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2조)
- 사무처리 위임조항을 폐지하고 직접사용의 의미조항을 신설함.(안 제25조)
- 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자의 감면자료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함.(안 제27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세감면조례가 1997. 12. 31로 유효기간이 종료되며, 또한 경상남도로 부터 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내무부의 지시로 일괄 허가조치됨에 따라
-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, 교육시설분야와 농어촌 주택 개량 및 대중교통 등에 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고
- 종전 향교재단 소유재산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면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조례안이 폐지, 신설등이 많아 기정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조례안으로 하여야 되지 않는지
- 답 : 경상남도에서 일괄 개정허가 준칙에 따라 시행하였음.
- 문 : 안 제16조제2항3호 중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의 기준은
- 답 : 낸내 영업기간 중 총 수입금액임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12. 2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